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검 토 보 고 서

2026. 11. 16.(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열정으로 열일하는 열린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마포구청장(건강증진과)

○ 제안일: 2026. 11. 10.

○ 회부일: 2026. 11. 12. (의안번호: 26-134)

2. 제안이유

○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기존 임산부 및 배우자에서 다문화 가정 및 출산가정의 공동양육자인 양가 부모(마포구에 주소지를 둔)까지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임산부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
(명문화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함)
- 임산부 및 배우자의 부모(양가 부모)를 지원대상에 포함
(양가 부모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공동양육자로 인정하고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출산가정의 백일해 확산 예방)

나. 지원내용 및 절차(안 제 3조)

- 임산부의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 지원
- 배우자 및 양가부모는 최근 10년 이내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1회 지원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2026. 10. 15.~11. 4.(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범위를 기존 임산부 및 배우자에서 다문화 가정 및 출산 가정의 공동양육자인 (마포구에 주소지를 둔) 양가 부모까지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임산부와 임산부 및 배우자의 부모(양가 부모)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 안 제3조에서는 임산부의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 지원하고 배우자 및 양가부모는 최근 10년 이내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1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상위법과 충돌여부를 살펴보면 개정조문 관련 저촉사항이 없으며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백일해 감염 예방으로 위한 무료 지원범위를 양가 부모를 공동양육자로 인정하여 마포구에 주소를 둔 양가 부모까지 확대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별 예방접종 지원 횟수 및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상자 확대시 재정부담은 기존 104백만원(임삼부, 배우자)에서 110백만원(양가 부모)으로 증가하여 6백만원의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 자치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18개구, 미지원 7개구로 이중 임산부만 지원하는 자치구가 5개구, 임산부와 배우자를 지원하는 자치구는 12개구, 동거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구는 1개구 임.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단체 지원 현황**

(2026. 8. 31. 기준)

자치구	백일해 자체접종 지원대상
강서구, 중랑구	임신부(임신 27-26주)
광진구, 동대문구, 송파구	임산부
서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임신부(임신 27-26주) 및 배우자
중구	임신부(임신 27-26주) 및 배우자 결혼이민자 임신부 및 그 배우자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성북구, 관악구, 강북구, 금천구, 영등포구	임산부 및 배우자
서초구	임산부 및 배우자, 동거가족 전체
종로구,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 강동구, 구로구, 강남구	미지원

- 따라서 백일해는 전파력이 높아 가족 내 2차 발병률 80% 이상으로 동거가족의 무료 접종 지원범위는 예산 효율성 고려, 마포구에 거주하며 출산가정의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공동양육자로 출산가정의 양가부모를 포함시키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강증진과	김영임 (9060)	최수미 (910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조례안 제2조(지원대상)

나. 조례안 제3조(지원내용 및 절차)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2항

3. 미첨부 사유

조례안 제2조(지원대상) 대상 추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건강증진과 오은혜
연 락 처	02-3153-9094

참 고 자 료

1.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2. 백일해 정보

○ 백일해란?

- 경련성의 기침을 유발하는 어린이의 급성 전염병, 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잘 걸림. 특히, 겨울부터 봄에 걸쳐 유행하며 전염성이 강함

○ 백일해 예방접종 ※ 관내 의료기관 평균 접종비 5만원

- Tdap(성인용 백신): 파상풍(T), 디프테리아(D), 백일해(P) 모두 예방가능
- 임신부 : 임신 시마다 1회 접종 → 태반을 통해 항체를 태아에게 전달, 신생아 면역 확보
- 배우자, 양가부모 : 1회 접종 시 면역력 10년 유지, 가족 내 2차 백일해 전파 차단

○ 출산 가정의 백일해 위험성

- 백일해 사망의 약 80%는 1세 이하, 어릴수록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 증가
- 임신부의 예방접종은 백일해에 가장 취약한 영아를 보호하는 최선책

▸ 임신부(결혼이민자 포함) 예방접종 후 형성된 항체는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 생후 2개월 영아의 백일해 예방접종 전까지 면역력 유지